

■ 세무사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11.9.16>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(제34조의2제2항 관련)

| 업 무 범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업 무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     | 시험 시행계획 공고, 시험출제위원 위촉·관리, 시험문제 출제·선정·편집·인쇄, 시험장소 선정,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·인계, 시험 시행(감독자 선정 및 감독),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부 판단, 시험채점,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발표 등 |
| 2. 제5조에 따른 응시원서에 관한 업무             |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 |
| 3. 제6조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납에 관한 업무         | 응시수수료 수납 및 환불 등   |
| 4. 제8조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업무 |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등   |
| 5. 제9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업무      | 합격예정자 명부작성, 합격통지, 합격자 발표(공고), 자격증 신청안내 등  |
| 6.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업무 | 해당 시험의 정지   |